

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안내

■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

구분	내용
공급비율	- 공급 세대수의 15% 범위 : 총 54 세대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(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)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제28조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무주택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(재혼포함)중이거나 미혼인 자녀(입양포함/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등본상 등재된 자녀)가 있는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자를포함)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(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·세액공제·세액감면 등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) - 소득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우선공급 70% : 세대의 월평균 소득 130% 이하 2. 일반공급 30% : 세대의 월평균 소득 160% 이하 -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,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-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- 소형·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- 세대원 중 한사람이라도 과거 주택(분양권)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, 「주택공급에관한규칙」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, 생애최초 자격부여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일순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 화성시2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%,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%, 경기도 2년 미만 서울시, 인천시 거주자 50%를 공급 함 -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과거 특별공급 1회 사용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 할 수 없음 ※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자는 선정 할 수 없음 ※ 재당첨 제한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할 수 없음 ※ 1순위 요건에 충족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② 무주택 세대주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해당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할 수 없음

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

공급유형	구분	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생애최초 우선공급 (기준소득, 70%)	130% 이하	7,839,208원	9,222,467원	9,222,467원	9,611,741원	10,111,430원	10,611,119원
생애최초 일반공급 (상위소득, 30%)	130% 초과~ 160% 이하	7,839,209원~ 9,648,256원	9,222,468원~ 11,350,728원	9,222,468원~ 11,350,728원	9,611,742원~ 11,829,835원	10,111,431원~ 12,444,837원	10,611,120원~ 13,059,838원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청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 ※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관계법령의 변경이 있거나,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주택법」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이 우선 적용됩니다.